

주주의 권리

안녕하세요. 정호석 변호사입니다.

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요.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. **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는 회사에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(상법 제 462 조), 청산 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(상법 제 538 조)**이 대표적입니다.

상법은 위와 같이 주주가 1 주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,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.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사회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
다만,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한정됩니다.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사항	규정	행사요건
주주제안권	제 363 조의 2	발행주식총수의 3/100
대표소송	제 324 조, 제 403 조, 제 424 조의 2, 제 467 조의 2, 제 542 조	발행주식총수의 1/100
주주총회소집청구	제 366 조	총발행주식총수의 3/100
총회검사인선임청구	제 367 조 제 2 항	총발행주식총수의 1/100
집중투표청구	제 382 조의 2	총발행주식총수의 3/100
이사감사행미청해임청구	제 385 조 제 2 항, 제 415 조	총발행주식총수의 3/100
유지청구	제 402 조	총발행주식총수의 1/100
회계장부열람권	제 466 조	총발행주식총수의 3/100
업무검사권	제 467 조	총발행주식총수의 3/100
해산판결청구권	제 520 조	총발행주식총수의 10/100

소수주주권은 경영권 분쟁 시 많이 사용되는데, 특히 **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.**

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(상법 제 466 조 제 2 항), 주주는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열람청구를 할 수 없고, 회사의 어떤

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(대구지방법원 2002. 5. 31. 결정 2002카합 144).

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

정호석 변호사

Partner

hoseok.jung@seumlaw.com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 2016 SEUM Law.